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16
----------	-----

제출년월일 : 2008. 5. 7.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장 등의 여비 지급구분을 정함(안 제3조제1항).
- 나.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
- 다.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대전광역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대전광역시장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전광역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 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3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

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일 기준)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시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구분란의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특호라목을 적용한다.</p> <p><신설></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대전광역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p> <p>②대전광역시장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p>
<p><신설></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한다.</p>

관 계 법령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 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제17조(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제24조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그 발령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귀국하는 때에는 그 해당 직급·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전역된 자 등의 여비) ①~③ (생략)

제29조(여비지급의 특례) ①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08.2.29>

여비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제1호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 (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제2호	<p>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나. 위 제1호,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p>
-----	--